



사례: 가처분집행채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처분 집행 채권자의 책임

77

핵심 쟁점 : 과실 추정

-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특허권자가 특허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하여 가처분 집행을 하였으나 나중에 특허무효 등으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 ▶ 대법원 판례 : "가처분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대법원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제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반복하여 판결함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7나105732 판결

78

사실 관계

- ▶ 특허권자는 경쟁회사 A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여 승소, 해당 제품의 제조, 판매금지명령을 받아 집행
- ▶ 특허권자는 A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80억원에 해당하는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신청 승소, 가압류 집행
- ▶ 그 결과, A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구매회사는 80억원이 넘는 물품대금을 법원에 공탁
- ▶ 특허소송이 시작되자 A 회사는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 특허심판원에서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심결
- ▶ 그 뒤 A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을 받고,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위 공탁금을 수령
- ▶ 이후 대상 특허는 특허법원 및 대법원을 거쳐 결국 무효로 확정되어 소멸
- ▶ 결국, 제조판매금지가처분 뿐만 아니라 채권가압류 결정 모두 각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판명됨 -> A 회사는 특허권자를 상대로 특허권 행사로 6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

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7나105732 판결 (계속)

79

서울고등법원 판결내용

- 기본 법리 확인
가처분 및 가압류가 법원의 재판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지만 본질상 실제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으로 집행채권자 책임 하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함
- 과실추정을 복멸(覆滅)할 특별한 사정 인정 여부
각별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함. 도중에 일부 유효 심결이나 판결이 있었다거나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 등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이 잇갈리는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추정이 복멸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 참고 :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38 판결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집행한 특허권자가 본안소송에서 1,2심을 승소한 후 상고심에서 패소하여 최종적으로 패소 확정, 7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조차도 특허권자의 과실을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7나105732 판결 (계속) - 손해배상의 범위

80

손해배상의 범위

- 인정 부분
가압류되었던 공탁금에 대한 이자, 특허발명의 회피설계 비용, 부품대체 비용, 인건비 등에 관한 손해
- 불인정 부분
수주실패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판매 계약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 구매자가 다른 회사로부터 대체 구매를 할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납품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 영업이익의 일실손해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정신적 손해
무효 특허권에 근거한 부당가처분으로 재산상 손해 이외에도 영업상의 신용과 명예의 손상 등을 초래하여 A 회사가 적지 않은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고 하여 위자료를 인정함
- 총액: 특허권자는 A 회사에게 약 9억6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

지재권분쟁, 특허심판소송, 침해소송, 민형사소송, 손해배상, One-Stop 대응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